

# 방통위,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

##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

## 방송광고 시간제한품목의 가상, 간접광고 규제 정비

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「방송법」 개정 에 따라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·간접광고 규제 등 을 정비하기 위해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.

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 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·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했 다. 또한 지상파,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에 편성되 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 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(이하 미디어렙)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.

주류(17도 미만)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 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 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·간접광고도 가능하

도록 규정을 정비했다.

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 혁심사, 법제처 체계·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등 상위법 개정 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, 향후에도 방송광고·편성 관련 규 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.

광고업계 관계자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주제작 사도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나, 판매방식이나 수 수료, 방송사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자칫 광고주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 **KAA**

이수지 기자 susie@kaa.or.kr